

## 무단방치자동차 사망자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

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4.04.26. ~ 05.10.(14일간)

2. 공고대상 : (붙임참조)

3. 강제전인 : 2024.05.10. 이후

4. 공시송달내용

가. 차량 소유자(점유자)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전인 될 예정입니다.

나. 강제전인 된 이후 자진처리 하시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(20~30만원)이 부과되고,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(직권폐차)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되며, 자진처리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(100~150만원)이 부과됩니다.

다. 아울러,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5.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(☎043-740-3512)로 문의 바랍니다.

2024년 4월 26일

영 동 군



##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

차량 등록번호	소유자		방치장소	송달사유	비고
	이름	주소			
61너3926	이○숙	충북 영동읍 눈어치로	영동읍 눈어치로 24	사망	자진처리
92러0578	김○기	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	영동읍 계산리 655-9	사망	자진처리